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 정 2017. 01. 19.

개 정 2018. 07. 27.

개 정 2024. 02. 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구원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금고'란 전북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연구원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금고약정'이란 원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 또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출 및 예금금리
3.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수행·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연구원과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②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전북연구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①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중 항목 1, 3, 4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해당 세부항목의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퍼센트의 편차를 두며, 2번과 5번 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대출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4.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 상시 출납업무 수행 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부”는 전북연구원의 금융업무를 일관되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 기준으로 배점한다.
5. “ERP시스템과의 연계서비스 제공”은 금융기관이 독자적 혹은 금융기관과 협약된 중계서비스社(VAV社)를 통해 전북연구원의 통합정보관리프로그램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조회기능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6.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
7.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도내 금고 취급 경

험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8.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
9. “지역사회기여실적”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
10. 협력사업추진계획은 전복연구원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배점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원장은 금고지정을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회의만 진행한다. <개정 2018.7.27., 2024.2.23>

③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촉된 때로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원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금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지정 공고와 약정서체결) ①원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관련 법규의 준수 의무, 세입·세출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원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원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운영 보고) ①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상·하반기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운영보고서에는 회계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원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27.>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23.>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1순위)6점, (2순위)5.4점, (3순위)4.8점, (최저순위)3.6점	(6)
	- 국내평가기관 (1순위)4점, (2순위)3.6점, (3순위)3.2점, (최저순위)2.4점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
	- 총자본비율(안정성) (1순위)8점, (2순위)7.2점, (3순위)6.4점, (최저순위)4.8점	(8)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1순위)7점, (2순위)6.3점, (3순위)5.6점, (최저순위)4.2점	(7)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1순위)8점, (2순위)7.2점, (3순위)6.4점, (최저순위)4.8점	(8)
2. 연구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순위)6점, (2순위)5.7점, (3순위)5.4점, (최저순위)3.6점	(6)
	나. 대출금리 (1순위)4점, (2순위)3.8점, (3순위)3.6점, (최저순위)2.4점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1순위)5점, (2순위)4.7점, (3순위)4.4점, (최저순위)3점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순위)3점, (2순위)2.8점, (3순위)2.6점, (최저순위)1.8점	(3)
3. 이용 편의성	소 계	19
	가.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 (1순위)5점, (2순위)4.5점, (3순위)4점, (최저순위)3점	(5)
	나. 상시 출납업무 수행 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부 (1순위)7점, (2순위)6.3점, (3순위)5.6점, (최저순위)4.2점	(7)
	다. ERP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1순위)7점, (2순위)6.3점, (3순위)5.6점, (최저순위)4.2점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1순위)7점, (2순위)6.3점, (3순위)5.6점, (최저순위)4.2점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1순위)7점, (2순위)6.3점, (3순위)5.6점, (최저순위)4.2점	(7)
	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1순위)7점, (2순위)6.3점, (3순위)5.6점, (최저순위)4.2점	(7)
5. 지역사회기여	소 계	9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항 목	세부항목	배점
및 연구원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1순위)5점, (2순위)4.7점, (3순위)4.4점, (최저순위)3점	(5)
	나. 연구원과 협력사업 계획 (1순위)5점, (2순위)4.7점, (3순위)4.4점, (최저순위)3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연구원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